

CONTENTS

업무보고 [제 364호]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02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06
건설법령 개정 동향	11
기타사항	23
2018년 10·11·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34
건설업체 현황	35
회원사 무료 상담 서비스	39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가. 특허공법 적용 공사의 부당행위 개선 건의

- 건 의 처 : 서울시(재무과,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분회(계약제도실)
- 건의일자 : '18.10.15

■ 주요 건의사항

-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 체결시 통상실시권자 제외규정 준수
- 실시권자 등의 독점적 지위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촉구
 - 협약 체결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최소 3인 이상의 실시권자 확보 등
- 사용협약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협약 체결 금지
 - 특히 기술사용료 지급 관련 사항 수정을 통한 하도급 강제 금지
- 발주처의 예규 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 · 감독 철저
 - 실시권자 등과 낙찰자간 원활한 협의를 하는지 확인
 - 하도급률의 적정 여부, 하도급의 위법 여부, 재하도급 여부 등
- 건설기술진흥법상 우선적용 규정이 있고 활용률이 높은 건설신기술 우선 선정

■ 건의결과

- 서울시(계약심사과)는 시회 건의내용을 사업부서, 산하기관 및 구청에 시달 ('18.10.18)하여 주의 촉구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18.12.4)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가이드에 반영

나. SOC예산 확대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 건의

- 건의처 : 국회의원 박홍근, 이해훈, 황희 사무처
- 건의일자 : '18.11.

■ 주요 건의사항

- SOC 예산 확대 호소문 전달 및 예산확대 건의
 - 서울시 인프라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 전달 및 서울지역 SOC 투자확대 건의

■ 건의결과

- 정부 SOC예산 : 전년 대비 8,000억 증액된 19조 8,000억원 편성
- 서울시(도시계획 · 재생 분야) : 5,412억 증액된 1조 272억원 편성

다. 특허 적용공사의 감독 철저 건의

- 건의처 : 서울시(재무과,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의일자 : '18.11.23, '18.11.27

■ 추진경위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입찰공고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입찰공고('18.11.21)
- 사용협약서에 통상실시권자 포함 및 기술사용료율을 0%로 설정하여 사실상 기술보유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의 하도급 강제

■ 주요 건의사항

- 기술보유자와 낙찰자간 원활한 협의 여부
- 하도급률의 적정여부 및 기술보유자 등의 재하도급 여부
- 기타 사후과정 이행여부 철저 확인

라. 윤준병 행정부시장과 「건설산업 정책 간담회」 개최

- 일자·장소 : '18. 12. 3, 행정부시장실
- 참석자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및 관계관
(업 계) 회장 및 회장단, 장경래 대의원
- 주요내용 : 업계 현안사항 협의 및 애로사항 건의

■ 주요 건의사항

- 도시경쟁력 확보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중견·중소건설업체 남북경협 및 도시재생사업 참여 지원
-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 복합공종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적정 발주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개선
-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건설업계 참여 확대
- 지역건설업체 공공공사 참여시 인센티브제 마련 등

■ 건의결과

- 서울시(건설혁신과)는 우리시회 건의사항별 담당 부서를 선정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관련 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하도록 시달('18.12.10)

마. 내진보강공사 및 복합공종 학교시설공사의 종합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

- 건의처 : 서울시교육감(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 건의일자 : '18.12.12

■ 추진경위

- 서울시 일부 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및 동일 학교 시설물의 공사를 종합공사가 아닌 외벽공사, 바닥공사, 창호공사 등 각각의 공사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등 부적정 발주사례 증가

■ 주요 건의사항

- 교육부 고시 및 매뉴얼 준수 촉구
 - 교육부 내진설계기준 고시에 따른 매뉴얼* 및 건축법상의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공사업 발주 요청
 - *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 “내진보강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의 대수선에 해당한다.”)
- 건설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발주요청
 -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다수의 공종이 포함되어 공종간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

■ 건의결과

- 서울시 교육청은 시회 건의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12.14)

바. 지하철 내진보강 공사 적정발주 건의

- 건의처 : 서울교통공사
- 건의일자 : '18.12.13

■ 추진경위

- 서울교통공사는 '18.12.10~11 지하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 5건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하철 내진보강공사는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구조물을 보강하여 내진 1등급 구조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로서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이설 후 재설치해야 하는 “종합적인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임

■ 주요 건의사항

-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등 시설물의 성능개선공사를 포함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업종별 업무내용 기준」 및 ‘성능개선’ 취지를 감안하여 종합건설업 건설공사로 발주 건의

- 참석자 : 회장, 회장단, 건설경제신문 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건산연 원장, 두산건설 박태원 부회장, 삼부토건 이용재 대표이사, 삼환기업 이계연 대표이사 및 대표회원 등 총 94인
- 강연주제 : “IoT(사물인터넷)과 건설산업 활용”
- 연결의 진화가 만드는 변화와 미래 -
- 강연자 : 최형욱(라이프스퀘어 대표)

나.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 일 시 : 11. 26(월) 14:00~16:5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건설업계 CEO, 임직원 및 남북경협 관계자 등 80인
- 주제 및 강사

주제	강사
【제1주제】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제2주제】 남북 경험과 북한 투자 관련 법제도 해설	법무법인 태평양 이찬호 美 뉴욕주변호사 (전 통일부 교류협력과장)
【제3주제】 남북 경험 추진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수 자문위원 (전 현대아산 상무·국회 대변인)

「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

가. 2018-4차 대표회원 조찬강연회 개최



- 일시 : '18.11.21(수) 07:30~09:20
-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7층 두베홀

다. 건설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8. 11. 28(수), 12:00~13:00
- 참석자 : 총 11인(위원장 및 위원 9인, 사무처장, 건설정책실장)
- 회의내용

보고사항

- ① SOC투자확대 및 적정공사비 반영 추진
- ②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추진
- ③ 건설 업역체계 개편 추진동향

기타사항

- 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회원 지식경영 지원프로그램 운영
 - ②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 ③ 주요회의 및 행사 일정(안)
- 회의결과
 - ①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계 영향 분석 필요
 - ② 발주처의 각종 민원해결 요구에 따른 증액된 공사비 반영 및 민원해결 우수사례를 만들어 홍보확대 요망
 - ③ 간접비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대책 필요
 - ④ 업계현안 협의를 위한 수시회의추진 및 개별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등

라.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 일시 : '18.12.05(수) 14:00~17:20
-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64명(공무원 21명, 건설업체 등 43명)
- 세부일정

주제	강사
건설공사 보증업무 설명	건설공제조합 김중서 영업상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관리 지적 및 개선사례 -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개선내용	서울시 감사위원회 원영구 하도급관리팀장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방법 - 최근 공공공사 계약분쟁사례 중심 - 간접비 관련 대법원 판례 등 포함	법무법인 우송 박찬 변호사

마. 운영위원·대의원 연석 정책간담회 개최

- 일시 : 2018. 12. 19(수), 7:30
- 장소 : 그랜드하얏트 서울 2층 남산1번룸
- 참석자 : 총 35인 (회장, 운영위원·대의원, 사무처장, 건설정책실장)
- 간담회 주요내용
 - SOC투자확대 및 적정공사비 반영 추진
 -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추진
 - 건설 업역체계 개편 추진동향
 - 건설기술인력 수급방안 마련 위한 용역 추진
 - 건산법, 지방계약법 개정 동향 및 행사일정(안) 등 기타사항
 - 19년 경제정책방향 요지 등
- 건의 및 논의사항을 '19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추진



「건설법령 개정 동향」

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공포(18.12.8)

■ 주요 개정내용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벌점 부과
 - * ① 건산법상 재하도급 관리 소홀 ② 근로기준법상 임금연대책임 미이행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미실시 및 산업재해 은폐 교사·공모
- 누적 벌점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억원 이하 과징금)
-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연 15.5%) 적용
 - ※ 미지급시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억원 이하 과징금)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공공사 기성금 청구 및 수령
 - 수령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 금지
 - ※ 위반시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억원 이하 과징금)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
- 시공현장별 일괄보증(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하여, 착공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
 - ※ (거짓통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미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실시
- 적정하지 않은 경우, 대여업자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함
 - (미이행시) ①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시정명령
- 건설행상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이상 처분받은 자에 대해 등록말소
 - * 일괄하도급 금지, 동일업종 하도급시 미승낙, 재하도급 금지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위 유형별 처벌 차등화

지시·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국토부령이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

- 시행일 : '19.6.8
 - 다만, 제29조의3의 하도급참여 제한제 적용시,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48조의2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수급인 벌점 부과
 - 이 법 시행 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하도급 참여 제한
 - 시행 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기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 미적용
 -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18.12.31)

■ 주요 개정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6조)
 - ① 종합업체 → 전문공사
 - 종합 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제16조제1항제4호)
 - ※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 1월 1일부터 허용
 - ② 전문업체 → 종합공사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2인 이상의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이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 '24.1.1 이전까지는 전문간 컨소시엄에 의한 종합공사 수행 불가

③ 주계약자공동도급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제16조제1항제2호)

→ 종합업체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 명확화 (협회의견 반영)

• 종합 · 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상대 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수의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제16조제3항)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수행시 해당 종합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협회의견 반영)

• 하도급 제도 개편

① 종합-종합 간 하도급 허용(제29조제3항제1호)

-발주자 서면승낙 등 별도의 요건 없이 종합간 하도급 가능*

※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제29조제4항)

② 종합 · 전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 하도급 불가(제29조제2항)

-㉠ 발주자 서면 승낙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

③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제29조제5항)

-㉠ 발주자 서면 승낙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

•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 변경

- (현행)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 (개정)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 시행일

-공공공사는 '21.1.1부터, 민간공사는 '22.1.1부터 시행

※ 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수행 및 ②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1.1부터 시행

-직접시공 산정 금액기준 변경,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 통보 의무 등은 '19.7.1부터 시행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 규칙 개정('18.12.4)

■ 주요 개정내용

•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함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과 추가 납부할 계약보증금의 합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5를 한도로 함(협회건의 반영)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공사 대폭 확대

· (종전) 70억 이상 → (개정) 30억 이상 (협회건의 반영)

•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 입찰공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이윤율 등 제비율을 명시하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 확대 (협회건의 반영)
 - 입찰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계약체결·이행이 곤란한 경우
 -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현행)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 (개정)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로 개정
 - ※ 예규 개정시 업계부담 최소화 추진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사회적기업 도입
 - (현행)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개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
 - 건설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금액 확대
 - (현행) 7억원 → (개정) 10억원
- 시행일 : '19.3.5

1.3. 정부조달계약 적용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18.12.19)

■ 고시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재부장관 고시 금액
-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금액
 - 국가 공사 : (종전) 80억원 → (변경) 78억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 : (종전) 240억원 → (변경) 235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사 : (종전) 240억원 → (변경) 235억원
 - ※ 변경사유 : 환율변동
- 시행일 : '19.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구분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국가 및 기타공공기관	78억원 미만	78억원 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		235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100억원 미만	제한없음

1.4. 국가계약 예규 개정('19.1.1)

■ 주요 개정내용

- 종심제 배치기술자 요건 완화
 - 중소기업(3등급 이하)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완화(6개월 → 3개월)
- 복수예비가격 근거 및 범위 명시
 - 공사비삭감 사례방지 위해 복수예비가격 산정근거 및 범위 명시 (기초금액의 ±2%)
-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 지체상금 과다부과 방지위해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계약금액의 30%)
- 입찰공고시 단가책정기준 공개대상 명시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공표기관, 보험료 등 적용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임사항
-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 준수사항 명시
 -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공사자재 기성인정 기준 합리화
 - 강교 등 맞춤형 제작 자재 50% → 100%까지 기성인정 근거마련
-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 (PQ 및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가점(신인도)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 혹은 일자리창출 실적 중 택일
 - (종심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사회적 책임 가점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 (0.8~1.5점, 최고 · 최저등급간 격차 최대 0.4점)으로 전환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 도입
 - 자발적 노동시간 단축업체로 고용노동부의 확인 받은 업체
- 퇴직공제부금 정산근거 마련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의 경우에도 사후정산 등 가능토록 규정
- 시행일 : '19.3.5

1.5.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18.12.1)

■ 주요 개정내용

- 지연배상금 산정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폭염 명문화(협회 건의사항 반영)
- 국민연금보험료등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및 분담금 미납 3회 이상 발생시 탈퇴조치 등 가능 조항 추가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시 시공평가 항목 삭제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산(적격)
 - *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고용부 지정)
-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 신인도 최대 1점 가산(적격)
- 최근 1년 이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횟수에 따른 신인도 최대 -1점 감점(적격)
-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 통보토록 발주부서 담당자 의무 신설

1.6.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8.12.31)

■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사업관리 의무 강화
 -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및 이행 불능시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발주청 실정보고 의무화 신설
 - 건설업자의 현장여건변경 및 개선사항 검토 요구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 및 발주청 보고 의무화
 - ※ 감리자의 미이행, 발주청의 미접수시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실효성 확보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공사중지명령 사유 중 안전·환경관리 위반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추가 등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강화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착공전으로 명시
 - 안전관리 관련 미이행, 미승인착공 등 시행오류시 징역, 벌금 및 과태료

1.7. 하도급법령 개정

1) 하도급법 시행령 ('18.10.18 시행)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우수신용등급 기준 삭제)는 협회의 반대의견 반영하여 현행 유지

- 기술 자료 서류의 보존기간 개정
 -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 3년 → 7년
 - *그 외의 서류 보존기간은 현행유지(3년)
 - ※ 시행일(10.18) 기준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하도급 거래분부터 적용
-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확대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증액(별표2)
 -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 곤란시 적용하는 과징금 상한을 증액 : 5억 이내 → 10억 이내
 - ※ 시행일(10.18) 이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
- 벌점 상향(별표3) → 위반사업자 제재강화(부정당업자제재*)
 - * 벌점 누산점수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으로 고발될 경우 벌점 상향(3.0 → 5.1)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2.5 → 2.6)
 - ※ 시행일(10.18)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부과부터 적용
- 과태료부과기준 개정(별표4)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18.10.18)

- 시행령 별표2의 '과징금 상한' 증액(5억 이내 → 10억 이내)에 따른 과징금 기본금액 2배 상향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보복조치, 서면미교부 등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 내에서 과징금 결정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기존	개정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 규정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감경 사유	판단기준(고려요인)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사항」

■ 2019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공표

- 공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공표일(적용시점) : 2019. 1. 1
- 건설업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직종수	공표일			변동률	
		2019.1.1	2018.1.1	2017.1.1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체직종	123	210,195	203,332	193,770	3.38	8.48
	117	-	201,386	191,599	-	-
일반공사직종	91	197,897	190,702	181,134	3.77	9.25
광전자직종	3	316,642	305,604	282,575	3.61	12.06
문화재직종	18	244,131	237,460	230,322	2.81	6.00
	12	-	235,551	227,439	-	-
원자력직종	4	219,314	224,152	222,895	-2.16	-1.61
기타직종	7	231,976	224,043	209,344	3.54	10.81

■ 2019 달라지는 건설제도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하도급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산법상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이상 처분받은 자에 대해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금지, 동일업종 하도급 시 미승낙,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 ('19.6.19. 시행)
하수급인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수급인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유형별 처벌 차등화 - (지시·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묵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국토부령이 정하는 과실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6호, 제96조 제7호, 제98조의2, 제99조제6호 ('19.6.19. 시행)
수급인 벌점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급인 관리책임이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벌점 부과 - 벌점 누적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억원 이하 과징금) *건산법상 재하도급 관리 소홀, 근로기준법상 임금연대책임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미실시 및 산업재해 은폐 교사·공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5항 ('19.6.19. 시행)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사후통보 및 적정성 심사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 •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 적정성 심사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19.6.19.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19.12.19. 시행)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2년 이내)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19.12.19. 시행)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유예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기성금 청구 및 수령 - 수령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억원 이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19.6.19. 시행)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제도	• 대여계약 건별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현장별 일괄보증 - 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9.6.19. 시행)
하도급 및 기계대여대금 지연이자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 적용(연 15.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8항 ('19.6.19.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 금액 기준 변경	•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직접시공 비율 산정	건산법 제28조의 2제1항 ('19.6. 시행 예정)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신 설>	•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공개 -(민간공사) 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공공공사) ㉠, ㉡+㉢하도급부분의 발주자 예정 가격	건산법 제31조의 3제2항 ('19.6. 시행 예정)
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에 대한 건설업자간 통보의무	<신 설>	• 민간공사를 공동도급 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건산법 제22조 제8항 ('19.6. 시행 예정)
부실설계·시공 시 처벌 강화	• 고의로 부실설계·시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로 부실설계·시공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고의로 부실설계·시공시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로 부실설계·시공시 처벌 강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1호의2, 제102조제6호의2 ('19.3.18 시행)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부당 원가 산정 피해방지	<신 설>	• 입찰공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이윤율 등 제비율을 명시하도록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19.3.5 시행)
부정당제재 과징금부과 가능사유 확대	<신 설>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 확대 · 입찰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계약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 ·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2제1항 ('19.3.5 시행)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방안 발표('18.12월 예상) 후 2019년 초반 적정공사비 책정·지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시행 예정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 사회기반시설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단,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포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우목 ('18.3.13 시행)
----------------	--	---	--

• 행정안전부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19.1.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요건 확대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가능	• 조정 신청·협의 가능 요건 확대 - (현행) 원재료 가격 변동시 → (개정)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등) 변동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8.7.17 시행)
보복조치 원인 행위 유형 추가	•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 ①원사업자 범위반행위 신고 ②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③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위한 자료제출 행위	• 보복조치 원인행위 추가 ④법 위반 행위로 피해 입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18.7.17 시행)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①기술유용 ②부당 대금 결정·감액 ③부당 위탁 취소 ④부당 반품	• '보복 행위'를 적용대상에 포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18.7.17 시행)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 상한 조정	• 위반금액 비율 산정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 고려하여 산정	•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 상한 상향 - (현행) 5억 → (개정) 10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8.10.18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유형 명시	<신 설>	•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①기술 수출 제한 행위, ②경영 정보 요구행위, ③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 -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정보의 종류 고시('18.7.17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8.7.17 시행)	
분쟁 조정 제도의 효력 강화	<신 설>	• 하도급법 위반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시 조정대상 재산권의 소멸시효 중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4 ('18.7.17 시행)	
	<신 설>	• 조정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조의6 ('18.7.17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단일화	• 과태료 부과기준 : 기업규모(매출액), 위반형의 금액비율, 위반형의 건수, 법위반 전력	• 과태료 부과건수로 단일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8.5.1시행)	
기술 자료 관련		•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 : 거래 종료 후 3년	• 조사 시효 확대 - (현행) 3년 → (개정) 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18.10.18 시행)
		•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 3년	• 서류 보존기간 확대 - (현행) 3년 → (개정) 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8.10.18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기술 자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 ①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②비밀유지방법 등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③요구대상 자료 권리귀속 관계 ④요구대상 자료의 대가 및 지급방법 ⑤요구대상 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⑥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⑦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사항 추가 ⑧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⑨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18.10.18 시행)
벌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으로 고발될 경우 벌점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점 사항 - (현행) 3.0 → (개정)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8.10.18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시 벌점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점 사항 - (현행) 2.5 → (개정) 2.6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최저임금 인상	• 시간급 7,530원	• 시간급 8,35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9.1.1~'19.12.31
최저임금 산입범위	-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 ※ 적용시기 : '19.1.1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 40.5/1,000	• 37.5/1,000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9.1.1~'19.12.31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범위	• 근로자	• 근로자 • 건설기계사업법상 건설기계 특고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적용시기 : '19.1.1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	• 할인·할증 폭 : 20% ~ 50%	• 할인·할증 폭 : 일괄 20%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2019년도 적용 사업부터 적용
건설공사 노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건설공사 : 27/100 하도급 공사 : 30/100 	• <전년과 동일>	2019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9.1.1~'19.12.31
퇴직공제 부금	• 5,000원	• <전년과 동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17-44호 ※ 적용시기 : '18.1.1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 준수	• 고용부의 안전인증 기준 준수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고용부의 안전인증 기준에서 삭제하고,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 준수 토록 변경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2조, 제45조, 제56조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제35조, 제36조, 별표23, 별표24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제19호 ('18.12.29 시행)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낙찰율 적용 배제	〈신 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기준 금액으로 계상하여 낙찰율 적용 배제 ※ 발주자는 입찰시 예정가격 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고할 의무 -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토록 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4조, 제5조, 별표1, 별표1의3 ('19.1.1 시행)

■ 동대문구청 “사랑니눔 이웃돕기” 성금전달

- 일시 : 2018. 12. 14(금), 11:30
- 장소 : 동대문구청 청장실
- 참석자 : 허송 회장, 박인준 · 최태진 부회장, 이대성 감사
- 내용 : 성금 1,000만원 전달

■ 종로구청 “사랑니눔 이웃돕기” 성금전달

- 일시 : 2018. 12. 20(목), 10:00
- 장 소 : 종로구청 청장실
- 참석자 : 박인준 · 최태진 부회장, 이대성 감사
- 내용 : 성금 1,000만원 전달



「2018년 10·11·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건수)

업체수	발급서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38	614	961	326	1,901

●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지분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서	영업기간 확인서	공정관리 조직	10년간 동일 공종 실적	계
142	157	160	14	0	141	614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건)

건설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발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부정 당	산재 예방	계
107	15	106	104	99	99	1	114	6	108	109	93	961

다. 기타서류

(단위:건)

개별	건설공사실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인	회원 확인	계
	자기	총괄표	소계						
227	0	16	243	0	0	0	83	0	326

「건설업체 현황」

●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8.12.31현재)

구분	업체수						등록수					
	계	일반					계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원	8,305	2,969	1,893	3,129	27	287	10,262	2,969	1,893	3,737	340	1,323
비회원	4,001	181	652	3,374	33	106	4,496	181	652	3,480	43	140
계	12,651	3,150	2,545	6,503	60	393	14,758	3,150	2,545	7,217	383	1,463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8.12.31현재)

구분	업체수						등록수					
	계	일반					계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원	1,250	230	65	898	9	48	1,415	230	65	921	61	138
비회원	539	21	16	469	9	24	549	21	16	470	14	28
계	1,789	251	81	1,367	18	72	1,964	251	81	1,391	75	166

● 전입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건축	050704	두영종합건설(주)	박경환	경기	2018.09.14(2018.10.11)

2	건축	103050	희망종합건설(주)	윤춘국 안성근	경기	2018.09.20(2018.10.11)
3	건축	102652	(주)지토종합건설	이호섭	경기	2018.09.20(2018.10.11)
4	건축	050825	(주)디엔씨민은	양영환	광주	2018.09.17(2018.10.12)
5	건축	102877	더케이종합건설(주)	김종륜	경기	2018.10.22(2018.10.26)
6	건축	050700	(주)우보종합건설	김경건	경기	2018.10.25(2018.10.30)
7	건축	103063	(주)선경건설	이의섭	경기	2018.11.13(2018.11.20)
8	건축	102768	(주)한양씨애텍	김정열	경기	2018.11.19(2018.11.21)
9	건축	021482	네오종합건설(주)	박희일	부산	2018.11.16(2018.11.21)
10	건축	014265	나이스산업개발(주)	박형근	강원	2018.11.27(2018.12.03)
11	건축	050865	(주)일원종합개발	강달현	광주	2018.12.19(2018.12.26)
12	건축	021485	도선종합건설(주)	진은호	부산	2018.12.18(2018.12.26)

5	건축	013329	에이스케이프건설(주)	전선영	경기	2018.10.08(2018.10.19)
6	건축	014310	(주)청원종합건설	홍계선	경기	2018.10.15(2018.10.22)
7	건축	014220	신부종합건설(주)	김남중	인천	2018.10.18(2018.11.05)
8	건축	013581	광장파트너스종합건설(주)	최상일	경기	2018.10.31(2018.11.08)
9	건축	010635	(주)아울종합건설	이희형	경북	2018.10.19(2018.11.14)
10	건축	014321	(주)신흥종합건설	김동명	대전	2018.11.29(2018.12.04)
11	건축	014336	(주)피앤씨엘	정성운	경기	2018.11.08(2019.12.06)

● 진출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입 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건축	10259	토문건설(주)	최광윤	인천	2018.09.13(2018.10.01)
2	건축	014308	(주)우정종합건설	조형철	인천	2018.09.28(2018.10.02)
3	건축	013801	(주)삼성원건설	유춘옥	경기	2018.09.20(2018.10.17)
4	건축	013729	(주)서광종합건설	박철홍	전남	2018.10.16(2018.10.17)



■ 건설업 연말결산 및 실질자본금 교육 개최

- 일시 : 2018.10.26.(금), 15:00~17: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참석 : 232명
- 내용 : 건설업 연말결산 및 실질자본금 교육



■ 2018년도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 평가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8.12.19.(수), 15:00~17: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참석 : 403명
- 주요내용
 - 1.2차 실적신고 요령 설명
 -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설명 등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 상담방법 : 우리시회 사전신청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신청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ak.or.kr)→자료/통계→건설서식→민원서식/기타 참조
- 문의_ 법률 : 건설정책실 (02-3218-9117, pjingong@cak.or.kr)
 회계/세무 : 기획총무실 (02-3218-9112, pje@cak.or.kr)

• 법률 상담 - 변호사

시회고문	박찬(朴燦) 변호사	변철형(邊哲亨)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우송	법무법인 진
위촉기간	'18. 8. 1 ~ '19. 7. 31	'17. 12. 7 ~ '18. 12. 7
비고	전직 부장판사	전직 부장검사
프로필	-서울대 정치학과('79), 법과대학원('82)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2기 수료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서울대 정치학과 법조모임 회장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고려대 경영학과('94)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검사(특수3부) -울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특수부) -광주지검 부부장검사(공안부) -광주지검 목표지청 부장검사 -창원지검 특수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 회계/세무 상담 - 회계사/세무사

시회고문	한윤교 회계사	임의준 세무사
소속	반석회계법인 대표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
프로필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Univ.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 졸업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Price Waterhouse Co. 와 Deloitte Touche LA 회계법인 근무 -골드만삭스 COO,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장 및 COO, SC 저축은행 부사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86) -동부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제1특별조사담당관실, 법인세과, 법무1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행정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사무관) -역삼세무서 법인납세과장 -강남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위원"

종합건설업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지자체 신원조회 활용)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전,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재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지방전입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등기일자 기준)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